

이장(里長)선출 규정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읍·면지역 향약을 중심으로-

김일순, 양정철, 황경수*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Study on Analysis and Improvement of Head of Ri Election Rules & Regulations -Focusing on Eup/Myeon Regional Village Code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l-Soon Kim, Jeong-Cheol Yang, Kyung-Soo Hwang*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마을 향약의 내용 중 이장선출 규정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문헌 연구다. 자료수집은 2019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총 146개 마을의 향약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마을주민들이 직접 이장을 선출하고 있는 마을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선방안으로 선거권에서는 성평등한 참여와 참정권 보장을 명문화할 수 있도록 1세대 1표제의 선거권을 1인 1표제로 개선을 제안하였다. 임용 방법에서는 첫째, 마을 출생자가 아니면 이장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이장 후보자에 대한 자격 개선, 둘째, 각종 재해 발생 시 신체적 능력과 마을사업 수행에 따른 활동성 요구로 이장 후보자의 나이를 65세 이하로 나이 상한 지정, 셋째, 지역 토착 세력으로 자리할 수 없도록 이장이 임기를 후임자가 없는 경우 연임이 가능하다는 이장연임 규정 제한, 넷째, 마을 발전이라는 공공적 이익에 충실할 수 있도록 봉사자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한 교육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s a literature review that analyzes the head of Ri election rules and regulations described in the village code, identifies problems, and proposes solutions for these problems. For data collection, a total of 146 village codes was collected from January 2019 to August 2019. The results showed people in most villages vote for the head of Ri according to democratic electoral processes. For system improvement, a one-person, one-vote system was proposed instead of a one-family, one-vote system in order to enhance gender equality and political rights. As for the appointment system, the following changes were proposed: First, candidate eligibility should be improved as only people who were born in that village are eligible; Second, the maximum age of candidacy for the head of Ri should be established as under 65 years old by considering physical ability in the event of disaster occurrences and physical activity required for running village businesses; Third, consecutive terms of the head of Ri when there is no successor should be limited in order to prevent indigenous forces from settling in the local community; and Fourth,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for building the head of Ri's stature in order to devote to promote public interest for village development.

Keywords : Local Self-government, Village Code, Head of Ri, Right-to-vote for Head of Ri, Eligibility for Head of Ri

본 논문은 I. S. Kim의 박사학위 논문을 기반으로 작성함.

*Corresponding Author : Kyung-Soo Hwang(Jeju National Univ.)

email: kshwang@jejunu.ac.kr

Received October 6, 2020

Revised December 1, 2020

Accepted February 5, 2021

Published February 28, 2021

1. 서론

1.1 연구 필요성

읍·면 지역의 마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과 주민의 생활이 가장 가깝게 접하는 교차점으로 지방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관심을 논의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마을은 읍·면 행정의 보조적 조직 또는 행정 협력적 주민조직으로 볼 수 있으며, 지역에 기초를 두고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조직으로 자연재해나 외부의 위협에 공동대처하고 농사일 등을 공동으로 처리한다거나 어려운 이웃을 공동으로 돕는 일종의 인보단체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1, 2].

이에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은 주민의 한 사람으로 일선 행정에 참여하고 읍·면 행정의 보조기관의 성격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지방행정과 주민의 가교적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다[3, 4].

그러나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 이장은 이장직 자체를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시·군의회원과 같은 선출직으로 진출하기 위한 이력을 쌓는 용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대규모 투자와 개발이 예상되거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이 많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마을 이장 자리를 놓고 경쟁이 치열하며, 마을 이장 자리가 단순 봉사직이라는 얘기는 옛말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장의 권한과 역할을 둘러싼 갈등도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지역주민들의 뽑은 마을 이장을 놓고 해임과 선거무효 소송이 진행되는 등 이장선거 이후 갈등이 발생한 마을도 있고 마을마다 형태는 조금씩 다르나 각종 개발사업 유치 여부를 놓고 이장과 지역주민 사이에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신망과 리더십 있는 마을 대표를 통해 마을자치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보다 발전된 지방자치를 실천하기 위하여 마을 향약에 의해 선출되고 있는 이장선출 규정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기법을 통해 기존 연구에서 분석해 보지 못한 읍·면 지역의 마을 향약을 수집하여 이장선출 규정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문헌 연구로 세부 목적은 아래와 같다.

- (1)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은 누가 선출하는지, 선거권을 분석한다.
- (2) 이장임용 방법을 분석하기 위하여 선출 방법, 선출 유형, 후보자의 자격(거주기간, 나이, 공탁금)을 분석한다.
- (3) 이장이 임기와 임기제도를 분석한다.
- (4) 마을 이장선출 규정 분석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범위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읍·면 지역 마을(행정리)로 한정하여 향약을 수집하였다. 이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동 단위 마을에서는 향약을 근간으로 생활하는 환경을 찾기 어렵고 읍·면 단위 마을에서 향약을 보유하고 있는 빈도가 높고 마을 운영 기초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 지역 마을은 제외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 12개 읍·면 지역 총 172개 마을(제주시 7개 읍·면 지역 96개 마을, 서귀포시 5개 읍·면 지역 76개 마을)을 대상으로 향약 개정 시기가 매년 초에 개최하는 정기총회와 전반기 임시총회에서 개정된다는 점에 근거하여 2019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로 한정하여 연구자가 직접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이에 응한 146개 마을(제주시 읍·면 지역 89개 마을, 서귀포시 읍·면 지역 57개 마을)의 향약을 연구자료로 수집하였다(Table 1).

Table 1. Status of Collecting Village Codes

Area		No. of Villages	Villages Collected	%
Jeju-si	Hallim-eup	21	21	100
	Aewol-eup	26	26	100
	Gujwa-eup	12	6	50
	Jocheon-eup	12	12	100
	Hangyeong-myeon	15	14	93.3
	Chuja-myeon	6	6	100
	Udo-myeon	4	4	100
Seogwipo-si	Daejeong-eup	23	22	95.7
	Namwon-eup	17	8	47.1
	Seongsan-eup	14	12	85.7
	Andeok-myeon	12	5	41.7
	Pyoseon-myeon	10	10	100
Total		172	146	84.9

2.2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문헌 연구로 최종 개정된 마을 향약 이장선출 규정 중 선거권 및 임용 방법에 관한 내용을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기법을 활용하여 객관적, 체계적, 수량적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이장 선거권

마을 대표인 이장을 선출하는 선거권은 리민의 권리 중 가장 중요시하는 권리로 선거권을 놓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자, 해당마을에 피해 또는 손해를 끼쳐 마을총회의 의결로 자격이 박탈되거나 제한된 자, 실제 거주기간이 현저하게 짧은 자 등은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특히 리 운영비를 납부하고 있는 마을은 리 운영비 미납 시 선거권을 비롯한 피선거권, 의결권 등 모든 권리를 제한하는 등 마을마다 다양하게 기준을 정하여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분석 결과, 19세 이상자만 선거권이 있는 마을은 전체 마을의 52.1%에 해당하는 76개 마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0세 이상자 36개 마을, 18세 이상자 9개 마을 순이며, 대의원이 이장을 선출하는 마을은 3개 마을이다. 기타 12개 마을은 리 운영비 납부가구, 세대대표자, 회원 등에게만 선거권이 있는 마을이다. 추대의 방법으로 이장을 선출하는 10개 마을은 선거권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Table 2>.

Table 2. Status of Giving Right-to-vote (N=146)

Area	18 years old	19 years old	20 years old	representative	others	unidentifiable
Jeju-si	5	52	21	3	5	3
Seogwipo-si	4	24	15	0	7	7
Total	9	76	36	3	12	10

3.2 이장선출 방법 및 선출유형

이장선출 방법은 1인 1표제에 의해 이장을 선출하는 마을이 81개 마을, 세대를 대표한 1인이 이장을 선출하는 마을이 52개 마을, 그 외 13개 마을은 추대형식으로 이장을 선출하고 있는 마을로 선출 방법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선출유형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마을주민들이 직접 이장을 선출하고 있는 마을이 121개 마을, 개발위원회에서 추대하여 총회에서 인준하는 형태로 이장을 선출하고 있는 마을이 22개 마을, 각 자연마을의 대표로 구성된 대의원이 이장을 선출하는 마을이 3개 마을이다<Table 3>.

Table 3. Right-to-vote for Head of Ri and Electoral System (N=146)

Area	Right-to-vote			Electoral System		
	one-person one-vote	one-family one-vote	unidentifiable	direct election	nomination	representative
Jeju-si	55	30	4	76	10	3
Seogwipo-si	26	22	9	45	12	0
Total	81	52	13	121	22	3

3.3 이장 후보자 자격

3.3.1 이장 후보자 거주기간

제주특별자치도 이장·통장·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신설된 리 지역이거나 재공개 모집을 하였음에도 후보자가 없는 지역을 제외하고 해당마을에 계속하여 2년 이상 해당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후보자 자격이 있다[5].

분석 결과, 해당마을에 10년 이상 거주해야 후보자 자격이 있는 마을이 51개 마을, 5년 이상 40개 마을, 3년 이상 12개 마을 순이다. 그 외 해당마을 출생자가 아니면 후보자가 될 수 없는 마을 12개 마을, 규정을 따로 두지 않은 마을 8개 마을, 마을 출생자가 아니면 30년 이상 거주해야 후보자 자격이 있는 마을도 6개 마을이나 되며, 제주특별자치도 이장·통장·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후보자 자격이 있는 마을은 6개 마을뿐이다<Table 4>.

Table 4. Period of Residence of Head of Ri Candidate (N=146)

Area	natural-born resident	1 year	2 year	3 year	5 year	10 year	20 year	30 year	no regulation
Jeju-si	11	1	4	8	26	27	6	3	3
Seogwipo-si	1	0	2	4	14	24	4	3	5
Total	12	1	6	12	40	51	10	6	8

3.3.2 이장 후보자 나이

이장 후보자의 나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이장·통장·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25세 이상으로 하고 있다.

분석 결과, 30세 이상자에게 후보자 자격을 주고 있는 마을이 전체마을의 27.4%에 해당하는 40개 마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5세 이상 36개 마을, 35세 이상 20개 마을, 40세 이상 11개 마을 순이다. 그러나 나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거나 제한 없음을 명시한 마을도 27개 마을이나 된다. 특히 서귀포시 지역은 후보자에 대한 나이 규정을 두지 않은 마을이 서귀포시 전체마을의 29.8%인 17개 마을이다(Table 5).

Table 5. Age of Head of Ri Candidate (N=146)

Area	18 years old	19 years old	20 years old	25 years old	30 years old	35 years old	40 years old	no age requirement	no regulation
Jeju-si	0	3	5	29	32	7	3	2	8
Seogwipo-si	1	1	2	7	8	13	8	0	17
Total	1	4	7	36	40	20	11	2	25

3.3.3 이장 후보자 공탁금

이장 후보자에 대한 공탁금은 마을에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장선거 때마다 책정한다.

공탁금은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기도 하지만 선거사무 필요경비 및 불법선거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되며 사용 잔액은 마을로 귀속된다.

분석 결과, 전체마을의 24%인 35개 마을이 공탁금을 납부하고 있다. 제주시 지역 17개 마을, 서귀포시 지역 18개 마을로 비율로 보면 서귀포시 지역이 31.6%로 제주시 지역보다 많다.

Table 6. Head of Ri Election Deposit (N=146)

Area	Payment of Election Deposit	Amount of Election Deposit (Unit: 10,000 won)				No Election Deposit
		Less than 100	More than 100	More than 200	More than 500	
Jeju-si	17	6	7	2	2	72
Seogwipo-si	18	5	9	3	1	39
Total	35	11	16	5	3	111

공탁금액은 100만 원 미만 납부하는 마을이 11개 마을, 100만 원 이상 16개 마을, 200만 원 이상 5개 마을 이나, 공직선거법에 의한 시·도회의의원선거 공탁금 300만 원보다 많은 500만 원을 납부하는 마을도 3개 마을이나 된다(Table 6).

3.4 이장의 임기 및 임기제도

이장이 임기는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조례에 의하면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마을 운영규약에 따라 선출하여 임명된 이장은 마을 운영규약에 따르고, 읍·면장이 직권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연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6].

분석 결과, 2년을 임기로 택하고 있는 마을이 77개 마을, 3년 임기가 69개 마을로 비슷하다. 임기제도는 연임제를 택하고 있는 마을이 전체마을의 43.2%인 63개 마을로 가장 많고, 이어서 1회 연임 48개 마을, 단임제 29개 마을, 중임제 5개 마을 순이며, 기타 1개 마을은 2회 까지 연임이 가능한 마을이다.

두 지역을 비교해 볼 때 제주시 지역은 연임제를 택하고 있는 마을이 많고 서귀포시 지역은 서귀포시 전체마을의 49.1%인 28개 마을이 단임제를 택하고 있다(Table 7).

Table 7. Term of Head of Ri (N=146)

Area	term		term of office				others
	2 year	3 year	one-term	two-term	consecutive terms	one-consecutive term	
Jeju-si	55	34	1	5	46	36	1
Seogwipo-si	22	35	28	0	17	12	0
Total	77	69	29	5	63	48	1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 이장은 이장직 자체를 위해서 한다가보다는 시·군의원과 같은 선출직으로 진출하기 위한 이력을 쌓는 용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마을마다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각종 개발사업 유치 여부를 놓고 이장과 지역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마을 향약에 의해 선출되고 있는 이장선출 규정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써 신망과 리더십 있는 마을 대표를 통해 마을자치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보다 발전된 지방자치를 실천하기 위한 목적이다.

연구자료 수집은 8개월에 걸쳐 연구자가 직접 향약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파악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선거권에서는 세대를 대표한 1명이 이상을 선출하는 문제다. 마을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권은 남성과 여성 구분 없이 평등하여야 한다. 그러나 <Table 3>과 같이 1세대에 1명에게만 선거권이 있는 마을이 52개 마을로 전체마을의 35.6%이다. 세대주가 대부분 남성으로 여성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다. 제주 여성들이 경제활동 참여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는데 '여자의 섬'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가장 가깝게 접촉하고 있는 공적공간인 마을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 성평등한 참여를 명문화 할 수 있도록 선거권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임용 방법에서는 첫째, 이장 후보자의 자격 중 거주기간에 대한 문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규칙으로 정한 거주기간은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2년 이상 해당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다[5]. 그러나 <Table 4>와 같이 해당마을에서 출생한 자가 아니면 후보자가 될 수 없는 마을이 12개 마을, 마을 출생자가 아니면 20년 이상, 30년 이상 거주해야 후보자 자격이 있는 마을도 16개 마을이나 된다. 마을의 대표자인 이장은 마을회 임원을 거치면서 봉사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으로 마을 특성에 맞게 해당마을에 거주한 기간을 정하여 이장을 선출하는 게 맞다. 그러나 제주의 읍·면 지역 마을은 전원·취미생활,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이나 힐링, 은퇴 후 노후생활 등을 위하여 타지역에서 이주한 인구가 많다. 해당마을 출생자가 아니면 이장이 될 수 없는 조건, 마을에서 20년 이상, 30년 이상 거주해야 이장이 될 수 있는 조건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이장 후보자의 자격 중 나이에 대한 문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규칙에 의하면 25세 이상이면 이장 후보자가 될 수 있다[5]. 연구 결과로 파악된 이장 후보자의 나이는 <Table 5>와 같이 별도 규정이 없거나 제한이 없는 마을이 27개 마을이나 되며, 40세 이상자를 후보자로 선정하는 마을도 11개 마을이나 된다.

마을 이장의 대표적인 법정업무 중 하나는 지역민방위 대장으로 민방위 사태 발생 시 현장 지휘업무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조례에 의한 이장의 임무는 읍·면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리 관내 환경개선 및

교통질서 확립 등 지원에 관한 사항, 각종 공익활동 협조 지원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 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위기가정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역할 수행 등 복지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읍·면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의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6]. 즉 자연재해나 재해 발생 시 신체적 능력과 각종 사업수행에 따른 활동성을 요구하고 있어서 이장 후보자의 나이에 대한 상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셋째, 이장이 임기에 대한 문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조례에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나 마을운영 규약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6]. 연구 결과에 의하면 <Table 7>과 같이 연임제를 택하고 있는 마을이 전체마을의 43.2%인 63개 마을로 가장 많다.

연임제를 택하고 있는 이유는 마을 규모가 작은 경우 이장 업무를 맡아 수행할 인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지역 토착 세력으로 자리하여 각종 사업개입 및 주민여론 왜곡, 업무처리의 독단성 등의 문제도 있을 수 있으므로 연임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

넷째, 이장에 대한 위상 정립에 대한 문제다. 이장은 과거 행정의 전달자, 행정 보조자의 역할에서 주민의 대표자로 역할전환이 필요하다[7].

해수욕장, 공동목장 등의 수익사업과 마을재산 관리 결정 권한이 이장에게 주어지는 등 이장의 권한과 위상이 높아지면서 마을 이장 자리를 놓고 공탁금을 받고 선거를 치르는 마을이 <Table 6>과 같이 35개 마을이나 되며 각종 이권에 개입되어 주민들이 선출한 이장을 해임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마을공동체의 구심점이 되어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 발전이라는 공공적 이익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마을 대표자로서 해야 할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읍·면 단위 마을에서 향약을 보유하고 있는 빈도가 높고 마을 운영 기조로 활용되고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동 지역 마을을 제외한 분석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전체적인 특성을 반영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읍·면 지역 마을 향약을 직접 수집하여 기존 연구에서 분석해 보지 못한 마을 향약이 내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5. 제언

본 연구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제언한다.

선거권에서는 성평등한 참여와 참정권 보장을 명문화할 수 있도록 1세대 1표제의 마을 이장 선거권을 1인 1표제로 개선이 필요하다. 세대주 혹은 세대 대표자가 대부분 남성으로 여성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로 남성과 여성 구분 없이 평등하게 이장 선거권이 부여되도록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임용 방법에서는 첫째, 마을 출생자가 아니면 이장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이장 후보자에 대한 자격 개선이 필요하다. 제주의 읍·면 지역 마을은 10여 년 전 제주로의 이주 열풍으로 서로 다른 배경과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출생지와 구분 없이 이장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이장선출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각종 재해 발생 시 신체적 능력과 마을사업 수행을 위해 이장 후보자의 나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활동성이 강한 지역 청년들에게도 마을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나이에 대한 하한은 두지 아니하되 자연재해나 재해 발생 시 신체적 능력이 요구되고 각종 사업수행에 따른 활동성이 요구되고 있어 65세 이하로 이장 후보자의 나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 토착 세력으로 자리할 수 없도록 이장이 임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연임할 경우 지역 실정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행정업무를 처리하는데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는 장점이 있지만, 지역의 토착 세력으로 자리하여 여론 왜곡 및 업무처리의 독단성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향약에 정한 임기와 후임자가 없는 경우 연임이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을 두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이장은 마을의 발전이라는 공공적 이익에 충실할 수 있도록 위상 정립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장직에 대한 경쟁이 치열한 것은 단순한 행정기관의 심부름꾼에서 벗어나 마을의 대표이며 행정의 최일선 조직으로 대우를 받는 권한과 역할이 변화 때문이다. 지역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마을 대표자로서 해야 할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위·해촉 권한을 가진 읍·면장이 봉사자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한 교육 필요성이 요구된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읍·면의 하부조직인 마을을 발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 본다. 신망과 리더십 있는 마을 대표를 선출하여 지방행정조직의 기틀을 다지고 행정과 주민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한다면 보다 발전된 지방자치를 실천하는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References

- [1] K. S. Cho,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Village Headman's System in Korea. - For the Case of Kongju City -*, master's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p. 1, 2007.
- [2] S. J. Cho, K. J. Park,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and Improvement in System Operation of Li Manager - The Focused on Consciousness of Local Public Servants-,"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vol. 16, no. 1, p. 74, 2004.
- [3] Y. S. Han, P. D. Kim, "The Improving Plan and the Analysis on the Actual Condition of Tong·Li·B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vol. 15, no. 1, p. 26, 2003.
- [4] S. H. Mun, *The real condition of Tong(Li)-Ban organizational operation and development plan*.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2014.
- [5] Decree on the Appointment of Head of Ri, Tong, Ban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6] Ordinance on Establishment of Ri, Tong, Ban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7] S. J. Cho, P. D. Kim,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Tong·Village Headman's System in the Age of Localizatio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vol. 13, no. 4, p. 80, 2001.
- [8] 89 village codes of Jeju city,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21 for Hallim-eup, 26 for Aewol-eup, 6 for Gujwa-eup, 12 for Jocheon-eup, 14 for Hangeong-myeon, 6 for Chuja-myeon, and 4 for Udo-myeon).
- [9] 57 village codes of Seogwipo city,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22 for Daejeong-eup, 8 for Namwon-eup, 12 for Seongsan-eup, 5 for Andeok-myeon, and 10 for Pyoseon-myeon).

김 일 순(IL-Soon Kim)

[정회원]



- 2005년 2월 :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석사)
- 2020년 8월 :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박사)

<관심분야>

자치행정, 도시행정, 문화행정, 사회복지행정

양 정 철(Jeong-Cheol Yang)

[정회원]



- 2015년 8월 : 제주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일반행정 박사)
- 2017년 8월 :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특별연구원
- 2020년 3월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근무

<관심분야>

요트&크루즈정책, 지역개발, 해양관광, 문화행정

황 경 수(Kyung-Soo Hwang)

[종신회원]



- 1993년 2월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도시 및 지역계획 석사)
- 1997년 2월 :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박사)
- 2004년 8월 :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2020년 2월 ~ 현재 :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소장

<관심분야>

교통행정, 도시행정, 문화행정, 협상론